

형 의 실 효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1. 개정이유

- 개정전 형사소송법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현행 형사소송법 조문을 인용하도록 수정 필요
- 수사자료표 작성 관련 조문에 규정된 ‘인적사항’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취지로 항목 구체화 필요
- 기타 불필요한 조문 삭제 및 용어 정비

2. 주요내용

가. 현행 형사소송법 조문 인용

- 제6조에서는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 위임에 따라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
- 그런데 개정전 형사소송법 조문인 ‘제196조 제1항의 사법경찰관’으로 되어 있어 현행 형사소송법 조문에 따라 ‘제197조 제1항의 사법경찰관’으로 수정

나. 수사자료표 작성 항목 명확화

- 제2조에서는 수사자료표에 작성하는 항목을 규정하고 있고, 사법경찰관은 「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(경찰청 훈령)」 별표 서식에 따라 피의자의 ‘국적’, ‘성명’, ‘주민등록번호’, ‘주소’, ‘등록기준지’ 등을 작성하고 있음(외국인인 경우 ‘여권번호’, ‘외국인등록번호’도 포함)
- 실무를 반영하여 ‘인적사항’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‘피의자의 성명, 국적, 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인 경우 여권번호, 외국인등록번호) 등 인적

사항'으로 수정

※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 따라 인적사항을 구체화

다. 불필요한 조문 삭제

- 제2조의2는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의 위임을 받아 범죄경력 자료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
- 그러나 형실효법 개정으로 인해 해당 사항들이 법 제2조 제5호에 포함되어 별도로 불필요한 상황이므로 삭제(현행 형실효법 상 위임규정 부존재)

라. 기타 용어 정비

- 제7조 제1항에서는 “법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”라고 규정되어 있으나, 이를 알기 쉬운 용어인 “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”라고 정비

※ 같은 조 제2항에서는 “법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”로 규정되어 있어 문구 통일 필요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관계기관과 협의 예정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3. 4. ~ 4. 13.) 예정

대통령령 제 호

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피의자의 인적사항”을 “피의자의 성명, 국적, 주민등록
번호(외국인인 경우 여권번호, 외국인등록번호) 등 인적사항”로 한다.

제2조의2를 “삭제”한다.

제6조 중 “제196조제1항”을 “제197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7조 제1항 중 “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”를 “제6조제1항제1호부터
제4호까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수사자료표의 작성 등) ①수사자료표에는 <u>피의자의 인적사항</u> , 죄명, 입건관서, 입건일자, 처분·선고결과 등 수사경력 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.	제2조(수사자료표의 작성 등) ①수사자료표에는 <u>피의자의 성명, 국적, 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인 경우 여권번호, 외국인등록번호) 등 인적사항</u> , 죄명, 입건관서, 입건일자, 처분·선고결과 등 수사경력 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.
제2조의2(범죄경력자료의 범위) 법 제2조제5호에서 “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. 1. <u>선고유예의 실효</u> 2. <u>집행유예의 취소</u> 3. <u>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·추징·사회봉사명령·수감명령 등의 선고 또는 처분</u>	<u>삭제</u>
제6조(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)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<u>제196조제1항</u> 의 사법경찰관, 군사법원법 제43조의 군사법경찰관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로 한다.	제6조(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)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<u>제197조제1항</u> 의 사법경찰관, 군사법원법 제43조의 군사법경찰관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로 한다.

제7조(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 범위)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 <u>내지</u> 제4호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전부에 관하여 조회 및 회보를 할 수 있다. ② 법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·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7조(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 범위)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 <u>부터</u> 제4호 <u>까지</u>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전부에 관하여 조회 및 회보를 할 수 있다. ② (생략)
---	---